

전자기술연구소 규정

- 제 1조 (명칭)** 본 연구소의 명칭은 호서대학교 전자기술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 2조 (목적)** 본 연구소는 전자기술의 공학적 연구를 통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전자기술 관련 분야의 산업과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소재지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- 제 4조 (사업)** 본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1. 전자기술의 학술적 연구
 2.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학술 및 기술 교류
 3. 산학협동 연구 및 교육사업
 4. 학술세미나 및 기술서 발간
 5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- 제 5조 (구성)**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소장 : 1명
 2. 운영위원 : 약간 명
 3. 연구원
- 제 6조 (위촉)** 본 연구소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5.09.01)
- 제 7조 (소장의 직능)**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제 8조 (운영위원회)**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 9조 (경비)**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과제 용역비와 회원사 기업체의 지원금 및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- 제10조 (폐소)**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 (신설 2015.09.01)
- 제11조 (보고)**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 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 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 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- 제12조 (준용)**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)
- 제13조 (운영세칙)**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에 정한다.(조변경, 개정 2015.09.01)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